농업·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하영제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9428 발의연월일: 2021. 4. 13.

발 의 자:하영제·김형동·박덕흠

서병수 · 서일준 · 윤두현

임이자 · 정점식 · 한무경

강민국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2019년 12월 31일 이 법의 전부개정으로 농업·농촌공익증진직불제도가 전면 개편됨에 따라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이 될 수 있는 농지등과 지급대상자의 요건이 기준연도(2017. 1. 1.~2019. 12. 31.)에 종전의 쌀, 밭, 조건불리직불금 등을 정당하게 지급받은 실적이 있는 경우로 한정되었음.

이는 농업인등이 기준연도에 해당 농지에서 농사를 짓고 있었음이 명확한 경우에 해당하나, 기준연도에 실제 농사를 짓고 있었음에도 직 접지불금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던 농업인등은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있음.

이에 기준연도에 직접지불금을 지급받은 실적은 없으나 해당 기간 중 정부 수매 참여, 비료 구매, 농산물 판매 관련 증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여 농사를 지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에도 지 급대상에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농업인등의 소득안정에 보다 기여하려는 것임(안 제8조 및 제9조).

법률 제 호

농업·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농업·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 과 같이 개정한다.

제8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"경우"를 "경우 또는 해당 기간 중 정부 수매 참여, 비료 구매, 농산물 판매 관련 증빙 등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여 논농업에 이용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"로 하고,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"경우"를 "경우 또는 해당 기간 중 정부 수매 참여, 비료 구매, 농산물 판매 관련 증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여 밭농업에 이용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"로 하며, 같은 항 제3호 중 "경우"를 "경우또는 해당 기간 중 정부 수매 참여, 비료 구매, 농산물 판매 관련 증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여 농업에 이용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"로 한다.

제9조제1항제2호 중 "자"를 "자 또는 해당 기간 중 정부 수매 참여, 비료 구매, 농산물 판매 관련 증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 당하여 농업에 종사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"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8조(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	제8조(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
농지등) ① 농업에 종사하는	농지등) ①
농업인등에 대한 기본직접지불	
금 지급대상이 될 수 있는 농	
지등[다년생개량목초(多年生改	
良牧草) 및 사료작물의 재배에	
이용되는 초지는 제외한다. 이	
하 제20조까지에서 같다]은 다	
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.	
1. 1998년 1월 1일부터 2000년	1
12월 31일까지 논농업(벼, 연	
근, 미나리, 왕골을 재배하는	
농업에 한정한다. 이하 이 조	
에서 같다)에 이용된 농지등	
으로서, 2017년 1월 1일부터	
2019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	
중 종전의 「농업소득의 보전	
에 관한 법률」(법률 제16858	
호 농업·농촌 공익기능 증진	
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	
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	
한다. 이하 같다)에 따른 농	
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을 1회	

이상 정당하게 지급받은 실적이 있는 경우. 다만, 1998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 논농업에 이용되지 않은 농지등 중 다음 각 목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농지등은 1998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 논농업에 이용된 것으로 본다.

가. · 나. (생 략)

2. 2012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 밭농업에 이용된 농지등으로서, 2017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기간 중 종전의 「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을 1회 이상 정당하게 지급받은 실적이 있는 경우. 다만, 2012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 밭농업에 이용되

	경우 또는 해당 기간
	중 정부 수매 참여, 비료 구
	매, 농산물 판매 관련 증빙 등
	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
	해당하여 논농업에 이용되었
	음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
	가.•나. (현행과 같음)
2.	

지 않은 농지등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등은 2012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 밭농업 에 이용된 것으로 본다.

가. • 나. (생략)

3. 2003년 1월 1일부터 2005년 12월 31일까지 농업에 이용된 농지등으로서, 2017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종전의 「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」에 따른 조건불리지역소득보조금을 1회 이상정당하게 지급받은 실적이 있는 경우

	승빙 능 대통령령으로 성하는
	요건에 해당하여 밭농업에 이
	용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
	<u>경우</u>
	가.•나. (현행과 같음)
3.	
	<u>경우 또는 해당 기간 중</u>
	정부 수매 참여, 비료 구매,
	농산물 판매 관련 증빙 등 대
	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
	당하여 농업에 이용되었음을

②・③ (생 략)

제9조(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 저 자) ① 기본직접지불금의 지급 대상이 될 수 있는 자는 제8조 에 따른 기본직접지불금 지급 대상 농지등에서 농업에 종사 (휴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)하 는 농업인등으로서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여 야 한다.

- 1. (생략)
- 2. 2016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종 전의 「농업소득의 보전에 관 한 법률」에 따른 농업소득보 전직접지불금 또는 종전의 「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 접지불제도 시행규정」에 따 른 조건불리지역소득보조금을 1회 이상 정당하게 지급받은 자

증명할 수 있는 경우	
②・③ (현행과 같음)	
9조(기본직접지불금	지급대상
자) ①	
1. (현행과 같음)	
2	
	· <u>자</u>
또는 해당 기간 중	정부 수매
참여, 비료 구매, 농	산물 판매
관련 증빙 등 대통	등령령으로
정하는 요건에 해당	하여 농업
에 종사하였음을 증	증명할 수

	<u>있는 자</u>
②・③ (생 략)	②·③ (현행과 같음)